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영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8911

발의연월일: 2021. 3. 19.

발 의 자 : 이 영·박 진·김용판

권성동 · 홍문표 · 조태용

유창현 • 추경호 • 송언석

신원식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지방세특례제한법」은 「자동차관리법」제53조에 따라 자동차매매업을 등론한 자나 「건설기계관리법」제21조제1항에 따라 건설기계매매업을 등록한 자가 매매용으로 취득하는 중고자동차 또는 중고건설기계에 대해서는 취득세와 자동차세를 감면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2020년 12월 31일부로 종료될 예정임.

그러나 과세특례가 종료되어 중고자동차 및 중고건설기계를 매매하는 과정에서 취득세와 자동차세가 부과될 경우 매매비용 증가될 우려가 있음.

이에 매매용으로 취득하는 중고자동차 또는 중고건설기계에 대한 취득세와 자동차세에 대해 3년간 한시적으로 면제하도록 하려는 것임 (안 제68조). 법률 제 호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2021년 12월 31일까지"를 "202 4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8조(매매용 및 수출용 중고자	제68조(매매용 및 수출용 중고자
동차 등에 대한 감면) ① 다음	동차 등에 대한 감면) ①
각 호에 해당하는 자가 매매용	
으로 취득(「지방세법」제7조	
제4항에 따른 취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는 중	
고자동차 또는 중고건설기계	
(이하 이 조에서 "중고자동차	
등"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취	
득세와 자동차세를 각각 <u>2021</u>	<u>2024년</u>
<u>년 12월 31일까지</u> 면제한다. 이	<u>12월 31일까지</u>
경우 자동차세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의 명의로 등록된	
기간에 한정하여 면제한다.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